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7 선고 2019가단1266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

##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1. B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19. 12. 10

판결 선고 2020. 1. 7

##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546,804원 및 그 중 9,408,906원에 대하여 2015.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각 답변서 미제출과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원고 청구 인용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시행된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 중 소촉법에 따른 위 지연이자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판사 박예지

별지